2022-10-07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 1. 16. 선고 2014고 단2827 판결 특수절도,절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 결

사건 2014고단2827 특수절도, 절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

용음란)

피고인 A

검사 이용균(기소), 김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 16.

##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 제2의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의 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판시 제2의 범죄일람표 연번 6의 죄, 제3의 죄에 대하여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 유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인터넷전화(D)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여, 39세)이 운영하는 'F' 음식점의 전화(G)로 위 피해자에게 "너의 (음부의) 냄새를 맡고 싶다"라는 말을 하였다.

2022-10-07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3. 4. 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인터넷 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위 'F' 음식점의 전화로 "너의 보지에 (내 성기를)넣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신음소리를 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 2. 절도

피고인은 2014. 11. 4. 19:00경 고양시 일산서구 H에 있는 위 'F' 음식점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 간 후 그곳 화장실의 세탁기 안에 들어 있던 위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팬티 1벌을 가지고 가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2. 초순경부터 2014. 11. 4. 19: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팬티 6벌을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 3.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11.8. 20:00경 위 'F' 음식점에서, 그곳 출입문 유리창을 부근에 있던 돌로 깨뜨려 손괴한 후 그곳 방 안까지 침입한 후 옷장서랍 안에 있던 위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팬티 및 브래지어 약 20벌, 민소매 티셔츠 7벌, 스카프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 1.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 1. 압수조서 및 목록
-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및 재판종결 확인)처분미상 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에 대하여 벌금형, 연번 6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형법 제331조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별지 범죄일 람표 연번 1 내지 5의 각 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죄 상 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2022-10-07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절도죄는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특수절도죄는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 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그 외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인한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절도죄, 특수절도죄를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목적 또한 위 전과의 범죄사실과 같이 성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며, 피고인은 과거 절도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공판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스스로 진술하였으며, 일부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에 해당하여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판사 박재순